

建築許可制度

李文輔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입니다.

1. 建築許可制度의 개요

우리 나라 建築許可制度는 建築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비롯된다. 이 관련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許可의 대상

(1) 実体 : 建築物과 工作物이 대상이 된다.

建築物에 있어서는 鉄道·軌直敷地의 건축물,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国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건축물은 協議 또는 承認의 대상이 된다. 소규모의 건축은 地域 등에 따라 申告의 대상이 되거나 제외된다.

工作物에 있어서는 建築物과 관계깊은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許可의 대상이 된다.

(2) 行為 : 建築(新築·増築·改築·再築·移転), 用途变更, 大修繕이 대상이 된다. 허가대상이 되는 用途变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3) 地域 : ① 都市計劃区域内, ② 市邑의 区域内, ③ 高逸国道·一般国道·国有鐵道의 中心線으로부터 양측 500m 이내의 区域内, ④ 土地利用 管理法에 의한 基準地価告示對象地域·工業地域 및 聚落地 区内가 전면적인 허가대상구역이 되고, 이 이외의 区域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것만이 대상이 된다.

[2] 建築許可의 权限 등

(1) 建築許可权은 市長·郡守에게 있다. 法会의 규정에 의하여 区府長, 邑·面長에게 그 权限을 위임할 수 있다.

(2) 建築許可의 事前承認 : 일부 大規模 高層建築物 등의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事前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許可处分 등에 대한 是正命令 : 建設部長官·道知事은 市長·郡守 등의 行政处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4) 建築許可에 대한 制限 : 建設部長官은 国防·經濟

地域計劃 및 都市의 過大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3] 建築許可를 받아야 할 시기 등

(1) 建築許可를 받아야 할 시기 : 建築하기 전에 즉 “미리” 받아야 한다.

(2) 建築許可의 着工前 有效期間 :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 建築許可의 取消 등 : 違法한 建築·大修繕, 기타 소정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는 建築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效力を 정지시킬 수 있다.

[4] 建築許可規定 위반시의 罰則

特殊建築物이나 3層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을 許可없이 建築·大修繕한 때에는 6月 이상 3年 이하의 懲役에 처하고 3,000만원 이하의 罰金을併科한다.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2. 建築許可制度의 필요성과 그 機能

建築許可制度(또는 그 유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를 建築許可의 대표적인 機能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事前是正機能

建築法은 그 내용이 最低基準이라 하지마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個人의 自由意思를 구속하게 마련이므로 모든 건축활동에 있어서 건축법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建築法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의 違法防止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時期上으로 구분하면,

事前防止規定……建築許可規定 등

中間防止規定……着工申告와 검사, 中間申告와 검사,

竣工申告와 검사 등 事後防止規定……違反是正命令, 維持管理報告, 罰則規定 등

이 중에서 建築許可는 어떤 建築計酬의 내용이 이法의 규정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됨으로써 違法建築을 事前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豫防의機能이 있다.

[2] 国防·經濟·社会的인 調節機能

建設部長官은 国防上, 經濟上, 地域計酬 및 都市의 過大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建築計酬의 내용이 建築法 및 関係法令의 여러 규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허가의 充分條件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한을 할 때의 절차는, 建設部長官은 그 目的·對象区域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市長·郡守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절에 관한 권한은 建設部長官에게만이 부여되어 있다.

3. 建築許可制度上의 문제와 연구과제

建築許可制度에 있어서의 문제는 建築法上의 문제보다는, 주로 運用上에 문제가 있다. 그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許可行政能力의 未及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당시, 建築許可對象地域은 都市計酬区域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후 오늘날에 이르는 사이에 都市計酬区域이 新設追加되고 또 拡張되었고, 모든 市·邑의 구역, 国道·鐵道의 沿辺区域, 土地利用管理法에 의한 基準地価告示對象地域·工業地域·聚落地域 등이 전반적인 許可對象区域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邑·面에도 建築職公務員의 增員·配置를 요구하게 되었다.

1960年代 후반부터 급증한 건축활동은 종전의 상황에서 벌어나 高層化·大型化함으로써 構造·設備 등이高度화하여, 建築許可行政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고도의 능력과 더욱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公務員의 難職을 유발하였다.

또 수년전부터 海外建設輸出붐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流出을 가속되고 얼마 안되는 建築職公務員의 충원도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다.

건축직 공무원의 대량 부족을 당연히 建築許可行政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建築法에 있어서 큰 規則事項의 하나인 用途變更에 관한 行政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다음에 언급될 苦肉之策이라 아니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운용제도를 창안하게 된다.

사회가 개발될수록 전반적인 許可對象区域은 全国区域으로 확대될것이며, 건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것이므로, 이에 대처하여 建築職公務員의 확보에 대담한 결단이 요

구된다. 그것은 우선 報酬의 現実化와 業務環境의 改善이다.

[2] 建築許可에 있어서 建築計酬의 審查內容과 責任
建築許可处分에 앞서서 建築行政厅(즉 市長·郡守)은 무엇을 審查하여야 하는지의 明文規定은 없지만, 우선 建築法 및 同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의 규정 그리고 関聯法令의 규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高層·大型化된 建築物의 許可申請이 폭주하는데, 제한된 시간과 담당 공무원으로 그 모두를 建築計酬의 審查를 함께 있어서 그 많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철두철미 점검할 수 있는지——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자신있는 대답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建築許可申請書에 첨부된 그 많은 構造計算書를 일일히 검산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무리하다.

실제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고도의 기술능력을 요하는 사항에 결함을 가진 建築計酬이 실현이 된다고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추궁될 것이며 設計者인 建築土가制裁될 것이다.

따라서 建築許可를 하기 위한 建築計酬의 審查에 있어서 그 내용과 責任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方案의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建築法中 소위 集團規定(法第3章 道路 및 建築線, 第4章 地域 및 地区内의 建築物, 第5章 建築物의 面積 및 높이)은 建築許可行政厅이 하는 建築計酬의 審查內容으로 하고, 소위 個體規定(法第2章 建築物의 基地·構造의 建築設備)은 建築土의 責任으로만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建築許可行政의 간소화·신속화, 責任限界 등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建築法과 行政의 符合

建築行政의 근거가 되는 法律上의 여러 규정이 완벽하지 못하면, 그 行政은 혼란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건축법의 여러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都市計酬行政 기타 関係行政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建築行政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또 建築計酬上의 하자가 建築許可申請 이외의 여러 규정 또는 他法令上의 여러 관계규정에 대한 것이라도 당연히 不許可处分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建築許可制度上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예는 있으므로 우선 関係法令 規定의 整備, 특히 裁量規定의 極小化를 계속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関係行政의 未及으로 인한 建築許可 抑制 등이 없도록 建築行政能力을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4] 建築許可節次 改善策과 建築土의 連帶署名

建築許可節次 改善策의 하나로 建築許可申請書에 設計者인 建築士 이외의 제 2의 建築士의 連帶署名으로서 建築許可行政의 審查節次를 대행한다는 편의상의 행정운용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行政制度는 第 2의 建築士가 連帶責任署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設計圖書를 철저히 심사하게 될것 이므로 違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審查節次를 대행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不足을 보완할 수 있고, 建築許可行政의 신속·간소화를 기할 수 있다는 차상에서 비롯된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建築許可上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비상한 研究結果임에 틀림 없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建築許可是 建築法에 의하여 市長 및 郡守에게 부여된 고유의 权限이며 責任이다. 区厅長이나 邑·面長 등 下級官厅에 그 权限을 위임하는 경우 모두 建築法上의 明文化된 規定에 의하고 있다.

建築士의 連帶責任署名에 의하여 建築計劃의 審查 없이 建築許可处分을 한다는것은, 連帶責任署名을 한 建築士가 担當公務員을 대신하여 建築許可处分을 담당하는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建築士의 連帶責任署名이 있다 하더라도 市長·郡守는 建築許可가 고유의 权限이며 責任이므로 建築許可处分에 앞서 당연히 建築計劃의 審查를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行政運用은 建築法의 改定 없이는 곤란하다.

한편 위와 같은 行政運用을 전면적으로 제도화하여 실

행하는 경우, 建築士는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報酬 없이他人의 業務를 審查하여야 하고 또한 共同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建築設計活動의 創作活動이라는 主張에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4. 総 合

(1) 현시점에서 建築法上의 許可制度에는 부분적인 미비점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 行政운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行政운용의 改善策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建築法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2) 앞으로 建築許可對象은 社會發展과 더불어 그 대상지역이 全國的으로 拡大될것이 예상되며, 대상전수도 더욱 폭주하게 될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行政体制와 유능한 建築職 公務員의 大量確保에 결단이 필요하다.

(3) 建築許可를 위한 建築計劃의 審查에 있어서, 非現實의 審查를 탈피하고, 현실적으로 責任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制度가 필요하다.

(4) 조속히 전반적으로 法令上의 未備規定을 보완하고, 裁量規定을 극소화하는 한편 法令規定대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関係行政이 整備되어야 한다.

(5) 建築士의 連帶署名에 의한 行政운용에는 法律上, 또는 建築의 本質上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6) 建築行政은 현재의 統制行政으로부터 助長行政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東国大学校教授)